

5월

하랑이와 앞서가는 안전교육
중대재해 처벌법과 식중독 발생시 대응<https://dietary4u.mfds.go.kr/busansaha/>문의 : 200-1416~8

교육일시	년	월	일	요일	시간	:	~	:
교육참석자	원장/시설장	(인)	조리원	(인)	조리원	(인)		(인)

중대재해처벌법 이란?

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, 제조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3호)

-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-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-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10명 이상 발생

식중독과 중대재해처벌법

공용이용시설인 집단 급식실, 병원,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**중대시민재해**로 분류된다.
사업장의 경우 식중독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.

식중독 의심 시 대응 요령

즉각 조치

- 급식을 즉시 중단하고, 급식현장(보존식 등)을 그대로 보존

신고

- 신고 체계에 따라 시·군·구청의 위생 부서에 **즉시 신고**하여 신고

주의사항

-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기
-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기
- 탈수예방을 위해 물 먹이기

보고

- 시설의 장은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**시·군·구청의 위생 관련 부서**로 신고 (유치원은 교육지원청)

사후조치

- 보건소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
- 조사 후 시설과 기구를 살균, 소독

[법적사항]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관할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※ 미보고시 과태료 200만원(「식품위생법」 제86조 제1항)

식중독 발생 시 업무 분장

구분	총괄	환자 파악 이송 및 대책	역학조사협력
담당자	시설장	교사 및 복지사	급식관리책임자
내용	- 식중독 발생 신고 - 운영위원회 소집 - 치료 및 보상 대책 논의 - 급식 재개 등	- 환자 발생 현황 파악 - 환자의 후송 - 입원인원관리 - 보호자 협조 유도대책 마련	-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- 검체 채취 - 소독 등 업무협조